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설치한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 센터(영문명칭: Intelligent Construction System Core-Support Center)라 한다.

제3조(소재) 본 센터는 계명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센터의 사업)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IoT 분야를 건설시스템에 융·복합화하여 지능화 평가, 동작·인지·감각 영상분석 및 인공지능 분석 기술에 대한 연구수행
2. 제5조 1호의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3. 장비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유지 보수 및 신규 장비구축을 통한 장비공동 활용
4.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내부, 산업체,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장비활용 수익금을 통한 본 센터의 자립화 달성
5. 교내의 유사 연구자들에게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사업을 수행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면, 임기)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과제수행 기간이 되며 자립 이후에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주요 사업기간 중 센터장의 변경 등은 해당 전담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12조(예산) 센터의 예산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원금
2. 우리 대학교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

제13조(회계 및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예산편성)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영

제17조(이용)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이용절차)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장비의 집적 관리) ① 기 구축된 연구장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공간으로 집적하고 소유권은 기존 장비관리부서가 가진다.

② 기 구축된 연구장비의 집적화 후 발생한 수익금은 기존 장비관리부서의 수익금으로 처리하되, 이 수익금의 10% 이상을 본 센터의 수익으로 배분한다. 단, 장비관리부서의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 및 전담기관의 운영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